

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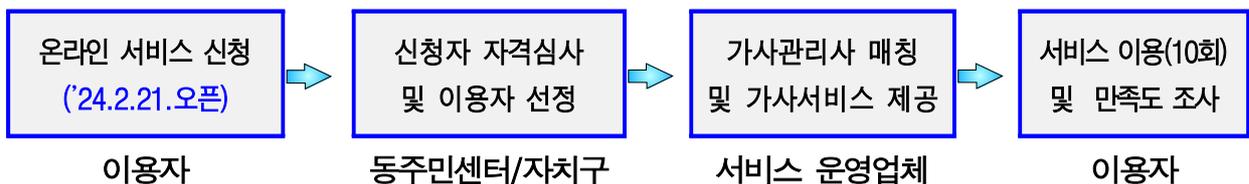
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'서울형 가사서비스'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

2024년 2월 21일

서울특별시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%이하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정
 - (임산부 가구) 임신 ~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
 - (맞벌이 가구)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
 - (다자녀 가구)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(만 18세이하)가 2명 이상인 가구
- 지원규모 : 약 10,000가구 지원 (자치구별 상이)
- 지원내용 :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
 -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주방, 화장실 청소, 설거지, 쓰레기 배출, 세탁 등
 - ※ 제외 : 정리수납, 취사, 아이돌봄, 반려동물 관련, 입주청소,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
- 우선지원 :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
 -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,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
- 지원횟수 : 1가구당 총 10회 (1회당 4시간,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)
- 이용요금 :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
- 서비스 절차



- **신청안내** ※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'24. 2. 21.(수) 오픈
 - 신청기간 : '24. 2. 21.(수) 10:00부터 ~ 6. 30.(일) 23:59까지
 - 신청방법 : 패밀리서울(familyseoul.or.kr)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(seoulgasa.or.kr)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 - 신청절차
 -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자가진단 → 개인정보 제공 동의 →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정보 입력 → 증빙서류 첨부 → 최종 제출
 - 제출서류 안내 : 붙임2 참조 ※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
 - ※ **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**
 - 결과안내 :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 예정

□ **기타 유의사항**

-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
 -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-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
 -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
 -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(타 시도로 진출가는 경우)
 -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
(예시: 2024년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,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)
 -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□ **권역별 문의처** ※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

| 권역 | 자치구 | 업체 | 연락처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도심권 (7) |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 | (사)한국가사노동자협회 | 1566-7390 |
| 서북권 (4) | 은평구, 마포구 | (주)참사랑씨앤이 | 02-3473-0508 |
| | 양천구, 강서구 |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| 02-2065-1584 |
| 서남권 (5) |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 | 든든피플 주식회사 | 02-845-8797 |
| 동북권 (5) | 종량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 |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| 1660-4766 |
| 동남권 (4) | 서초구, 강남구 | (주)유라이프 | 02-589-0115 |
| | 송파구, 강동구 | (주)휴브리스 | 02-2135-2299 |

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기준

□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(2024년 기준)

○ 가구원수별 소득기준

| 소득기준 (중위소득) |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(월평균 소득)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| 150% 이하 | 5,524,000원 | 7,072,000원 | 8,595,000원 | 10,044,000원 | 11,428,000원 | 12,773,000원 |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

(단위 : 원)
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| 2인 | 5,524,000 | 미포함 | 196,672 | 146,739 | 199,492 |
| | | 포함 | - | - | - |
| 3인 | 7,072,000 | 미포함 | 251,147 | 210,599 | 255,837 |
| | | 포함 | 283,671 | 237,872 | 288,968 |
| 4인 | 8,595,000 | 미포함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
| | | 포함 | 344,482 | 306,197 | 355,141 |
| 5인 | 10,044,000 | 미포함 | 360,818 | 332,772 | 377,299 |
| | | 포함 | 407,544 | 375,866 | 426,159 |
| 6인 | 11,428,000 | 미포함 | 422,318 | 400,222 | 453,848 |
| | | 포함 | 477,008 | 452,051 | 512,621 |
| 7인 | 12,773,000 | 미포함 | 453,848 | 433,430 | 498,289 |
| | | 포함 | 512,621 | 489,559 | 562,817 |
| 8인 | 14,118,000 | 미포함 | 543,979 | 524,772 | 589,232 |
| | | 포함 | 614,424 | 592,730 | 665,538 |
| 9인 | 15,463,000 | 미포함 | 589,232 | 567,285 | 659,065 |
| | | 포함 | 665,538 | 640,748 | 744,414 |
| 10인 | 16,808,000 | 미포함 | 659,065 | 625,932 | 773,009 |
| | | 포함 | 744,414 | 706,990 | 873,114 |

1.

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?
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.

*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(임신부의 경우)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※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
- 임신사실 확인서(병원 진단서) (필수) ※ 3개월 내 발급 예외
- *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


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자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(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)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※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자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2.

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?
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모집사직일 기준('24.2.21.) 미성년 자녀(만 18세 이하)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,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 지원이 됩니다. (미성년 자녀: 2005년생 2월 22일 출생 자녀부터)

*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

(다자녀의 경우)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 - 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자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3-1.

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? 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)
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,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.

*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)

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 - 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자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? 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)

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)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)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 참조, 부부 모두 제출) (필수)
-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* (필수)

(상시근로자의 경우)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
-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.
-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탁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.

(자영업자의 경우)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부가가치세신고서

(기타 일용직의 경우)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

- 소득신고서(고용임금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통장사본(3개월분) 등)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재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(직장가입자/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)

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)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 참조,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) (필수)
-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
-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* 제출 필요 (필수)
 - 상시근로자, 자영업자,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
-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(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단서 등)
※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(3개월 내 발급 예외)
- (해당시) (재녀기준) 부,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4.

자격확인용 제출서류별 발급처는?

| 구분 | | 구비서류 | 발급처 | |
|--|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사항 | |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필수) - 필요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* 의료급여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|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| |
| | | ②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- 질병 진단서, 장애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 | 의료기관 등 | |
| | | ③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된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 |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| |
| 임산부 | 임신중 | ① 임신사실 확인서 (3개월 발급 예외) *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| 의료기관 | |
| | 출산 후 1년 이내 | 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 - | |
| 다자녀 (2자녀 이상) | | 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 - | |
| 맞벌이 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) | | 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 - | |
| 맞벌이 (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) 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| | 상시 근로자 |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| - |
| | | | 1)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|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|
| | | | 2)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탁 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 | 해당 재직기관 |
| | | 자영업자 |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(세무서, 홈택스)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| - |
| | | | 1)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2) 부가가치세신고서 | 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 세무서, 홈택스 |
| | | 기타 |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소득 증빙자료 - 고용임금확인서, 통장사본(3개월분) 등 | 재직기관(고용임금 확인서) 등 |

